

제11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삼복학술상) 수상논문

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

최수연

이 연구는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경험과 그것의 정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실제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차별 피해는 특정한 '정체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력 관계의 맥락적 개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연대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새롭게 모색되는 연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장된 차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07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참여 관찰하고 단체 활동가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그간의 차별 규제에 대한 접근이 자유주의적 시민권 담론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연구는 시민권의 정치학을 개별 집단들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차별, 정체성, 사회운동, 연대, 시민권의 정치학, 차별금지법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전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민족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의 문제가 사회·정치적 담론장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Appadurai, 1996; Martiniello, 1997).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 국제 결혼 이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경험들이 담론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 혹은 ‘타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정책 용어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담론적·정책적 확산이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폭력, 가난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Castles & Davidson, 2000; 김현미, 2006; 김영옥, 2007; 오경석, 2007; 정가영, 2009). 차별을 단일한 정체성에 기반해 접근하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들과는 대조적으로, 현실에서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훨씬 더 복잡한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9년 7월 버스에 탄 인도 남성과 한국 여성을 향한 한국 남성의 혐오 발언(hate speech)이 차별로 문제화되던 방식은 담론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 당시 인도 남성을 향한 ‘더러운 아랍인’, ‘깜둥이’라는 혐오 발언은 한국 사회 최초로 인종을 차별의 틀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인도 남성과 동행했던 한국 여성을 향한 ‘깜둥이와 다니는 조선년’이라는 혐오 발언이 가려져있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인종,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축을 교차하며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문제화하는 언어는 ‘외국인’ ‘남성’의 경험만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¹⁾

1)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2009년 9월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 공청회에서는 이 사건이 인종차별로 규정되면서, 성별(gender)과 성(sexuality)에 기반한 차별 피

이처럼 개념적 차원에서 차별은 그 자체로 문제적인 사회현상이지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은 특정한 방식으로 선별된다. 따라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당위적 구호가 아니라, 차별의 복합적 구성, 차별 내부의 불평등에 관한 고민들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시정 기구의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 수단의 수위와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나 ‘성적지향’의 불/포함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장서연, 2007).²⁾ 당시,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차별 범주와 의미에 대한 논쟁들이 그토록 폭발적이었던 것은 차별금지법(안)이 기존의 차별 규제 법안과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차별 규제 법안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 장애인 ‘정체성’에 근간하여 차별을 다루어 왔다. 이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화 과정이었고, 그에 따라 차별의 의미와 범주 자체가 다양한 사회적 권력들의 개입과 긴장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대부분의 법·정책 담론들은 정체성에 국한된 기존의 차별 개념을 유지함으로써, 차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조

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공유하는 이주, 인권, 여성 단체들이 모여 당시 ‘성·인종차별대책위’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안) 제정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었던 시점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의 포함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였다. 그러나 2007년 10월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고용형태’가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되었으며, 차별시정을 위한 권고 조치도 한층 약화되었다. 이후,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 되면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2월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현재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들(*insectionality*)을 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법 담론 안에서는 차별 개념, 차별에 대한 사법 심사 기준의 명확성, 개별 차별금지법과의 법적 관계가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이준일, 2008; 이숙진, 2009; 신옥주, 2009; 정강자, 2010). 그러나 법 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춘 차별 담론들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차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를 보인다(송석운, 2004). 또한, 기존의 차별 관련 정책 연구들은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피해 사례를 드러냄으로써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다(민무숙, 2004; 박선영, 2004; 원영희, 2006; 안주엽, 2007; 유동철, 2007).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특정’ 차별 피해만을 사회적 관용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지배적 사회 구조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Brown, 2006).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개념과 법적 규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정체성 정치가 만든 경계를 넘어 새롭게 모색되는 연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장된 차별 이슈들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권의 정치학(*politics of citizenship*)은 정체성에 기반한 개별 집단들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들이 선별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차별 개념과 시민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 참여관찰

과 심층면접에 기초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규격화된 물음으로는 단체들 간의 긴장과 경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여관찰은 차별금지법(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인 2007년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무지개행동'의 활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결성한 '반차별공동행동'에도 결합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차별금지법이 촉발한 운동 사회 진영의 변화와 대응의 양상들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체 활동가가 아닌 '개인 연구자'라는 이질적인 위치성은 기존의 연대 활동에서 전제되는 정체성 정치의 경계와 그것의 효과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운동 '단체'들의 지형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했던 참여관찰과 더불어, 이 연구는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개인'의 경험과 고민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러하지만, 특히 연대 활동의 경우 그에 참여하는 담당 활동가들 개인의 의지가 연대 활동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심층면접은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접은 2008년 8월~9월, 2차 면접은 2008년 12월~2009년 3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면접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통해 운동 사회의 다양한 대응과 개입의 양상들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대강의 파악이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면접에서는 다양한 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연대 활동의 비전과 운동 이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³⁾ 심층면접 대상은 차별금지법(안) 제정 이후의 시민사

3) 1차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2차 면접의 물음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2차 면접에

회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들 중,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곳을 섭외하였다.⁴⁾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눈에 띄었던 점은 연구 대상 거의 대부분이 2007년 겨울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 예시조항이 선별되는 과정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연구 대상자들이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 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⁵⁾)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후의 ‘무지개행동’에 연대하는 단체들은 물론이고 ‘반차별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대부분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체화하고 있거나 혹은 매우 가깝게 느끼는 특별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더불어 연구 대상자들 거의 대부분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연령대라는 점은 새로 구성된 연대체가 친밀한 커뮤니티로 작동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었다.

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두 차례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 2차 면접의 시간상의 간극은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 4)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의 문제는 이 연구의 연구방법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초기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가능한 많은 단위들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1차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판단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최대한 많은 단체를 포괄한다는 판단은 각 단체들이 고유한 운동의 이슈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각 운동 영역들을 차별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차별의 내용을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며, 차별의 의미구성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은 ‘무지개행동’과 ‘반차별공동행동’에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5) ‘긴급행동’은 명칭 그대로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그에 따라 ‘긴급행동’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전환하면서 상시적 연대체로 재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6)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소속단체	활동 기간 (년)	'연구 대상'의 차별금지법 관련 활동 내용			차별금지법 관련 단체의 특이사항
					긴급 행동	무지개 행동	반차별 공동행동	
1	여	30대 초반	여성운동A	2	○		○	
2	여	30대 중반	여성운동B	8			○	초기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개입
3	여	20대 후반		3	○		○	
4	여	20대 후반	여성운동C	5	○	○		
5	여	30대 초반		7	○	○		
6	여	30대 초반		3			○	
7	여	20대 후반	장애인권 운동	2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참여
8	여	20대 후반		3			○	
9	남	30대 초반	인권운동	5	○		○	
10	여	20대 후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3	○	○	○	
11	남	30대 초반		3			○	
12	남	30대 초반	동성애자 인권운동A	6	○	○	○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계획
13	남	30대 초반	동성애자 인권운동B	4	○	○		

6) 사례의 순서는 동일 단체별로 모으되 무순으로 정리하였다. 개별 단체 내에서 차별 금지법 관련 활동의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 온 활동기를 추가 인터뷰하였고, 개별 단체들 중에서 '무지개행동'과 '반차별공동행동'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 단체별로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에 변동이 있었다.

3. 이론적 배경

인권 개념은 근대 초기 이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연권 개념에서부터 유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은 근대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시민권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홍태영, 2009). 즉 시민은 근대적 국가성원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에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담지자인 것이다(Marshall, 1977). 그러나 국민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근대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역사적, 정치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만들어 내는 경계를 통해 구축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지점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늘 쟁점이 되어 왔다는 점은, 시민권이 사회적 성원권의 정의를 확대 혹은 방어하려는 사회운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Turner, 1986).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역사적 과정은 1960년대 말 이래로 서구에서 나타난 신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신 사회운동의 다양한 저항적 실천들은 기존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하는 과정이었다(Bronner, 1999). 예를 들어 ‘흑인 청년이 자신의 시민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젊은 여성이 합법적으로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자 커플이 입양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흑인’, ‘여성’, ‘동성애자’ 정체성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이를 배경으로 그간 차이의 문제로 가려져 왔던 많은 차별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된 주체들이 정체성 정치를 통해 세력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모포비아에 저항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성소수자들, 강제추방에 대항하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윤수중, 2005; 장미정, 2005). 이처럼 ‘동성애자’로, ‘이주 노동자’로, 그리고 ‘장애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내는 정치적 과정은 집단적 입파워먼트(empowerment)를 이끌어냄으로써, 특정한 형태의 차별과 종속에 저항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화 과정 이면에는 언제나 탈정치화의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스콧(Scott, 1995)은 다문화주의, 다양성 담론들이 정체성 자체를 인간 존재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위계와 불균등한 권력을 비가시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 중 ‘하나’로 여성 정체성이 자연화될 때, 더 이상 여성 정체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 다양성 담론 안에서 여성 정체성이 관리,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운동이 도전하고자 했던 남성중심주의는 유지, 강화된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들이 다양성의 이름으로 탈정치화될 때, 문제는 ‘누가’, ‘먼저’ 사회 구조 안에 포함 혹은 배제될 것인가로 치환되어 버린다. 이 때 정체성의 정치학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의 집단이 되며,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적 권위에 대한 요청은 증폭되게 된다. 그 결과 탈정치화된 정체성들은 ‘불평하는 소송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표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대표하지 못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전략하게 된다(서동진, 2008). 결국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이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하여 법적 권리들을 주장하게 될 때, 권리담론은 실제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권력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경합된 다른 권리들을 무시하거나, 결국 더 힘 있는 집단이 주장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박은정, 2005).

무페(Mouffe, 1992)는 시민권에 대한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해석이 시민권을 개인이 국가에 대항해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로 한정함에 따

라, 정체성의 정치는 국가 권력과 법의 승인을 얻기 위한 끝나지 않는 투쟁으로 전략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정체성의 정치가 다른 차별 영역과 조우할 때, 이를 차별의 구성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정체성들간의 법적 권리 지분을 건 긴장을 만들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의 정치학(politics of citizenship)의 급진적 재구성을 위해,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⁷⁾ 그에 따라 국가를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승인하는 결정자가 아니라, 시민과의 상호 조정 속에 개입하는 행위자로서 위치 지을 수 있게 된다(Tilly, 1996, 2005).

이처럼 시민권 개념을 확장하려는 관점은 정체성, 권리 그리고 정치적 인 것의 의미를 좀 더 역동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에 주목하면서, 정체성 범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구성되는 차별 이슈의 확장을 드러냄으로써,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갖추어 나가야 할 사회·문화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고자 한다.

7) 정체성 자체를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크렌쇼(Crenshaw, 1989)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과 상응한다. 크렌쇼는 흑인 여성의 삶을 제시하면서, 인종, 성별, 계급과 같은 분석 범주들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차별의 의미를 과편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크렌쇼에 따르면 차별의 복잡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에 대한 사고 방식의 영향 때문이며, 차별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투쟁을 단일한 이슈로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재구조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유발-데이비스(Yuval-Davis, 2006)는 교차성에 기반한 분석이 구체적인 억압들을 통합해서 더 많이 억압받는 소수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흑인 여성의 삼중 억압에 대한 담론이 '흑인성', '여성성', 혹은 '계급성'을 구체적인 억압의 특정한 형태로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이는 다시금 본질화된 정체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4. 차별금지법(안)의 한계적 의미와 정치적 효과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문제가 법·제도적 층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여성운동과 장애인동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은 차별 개념을 확장시켜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⁸⁾ 여성운동과 장애인동의 차별반대운동들이 배경이 되어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사회적 배경을 조성해왔다면, 제도적 차원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 참여정부가 12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차별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제시하면서 부터였다.⁹⁾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인권법뿐만 아니라 조직법의 성격을 주요하게 다룸으로써 차별 금지 및 구제의 실체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별 금지 및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정강자, 2008).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의 초기 논의 과정은 국가의 의지가 크게 개입된 입법 과정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차별금지법

8) 우선, 성별화된 권력 관계를 문제 삼으며 ‘성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여성운동의 역사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 담론을 확장시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조순경, 2002). 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법·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사회 제 분야에 걸쳐 성평등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조형, 1996; 김선옥, 2005; 김엘립, 2005). 장애인 운동의 역사 역시 차별 논의를 확장시켜온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운동에서 무엇보다도 커다란 사회적 의제를 제기한 것은 이동권 투쟁이었다. 제도개선(손해배상청구소송), 정부투쟁(천막농성, 버스점거, 지하철점거), 캠페인(1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다각적인 운동 속에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의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최근 장애인운동은 차이에 대한 긍정적 정체화를 토대로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비장애 권력을 해체·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유동철, 2007).

9) 초기 참여정부의 정책 내용은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의 차별문제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5대 차별유형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 차별 규제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대상에서 연령차별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학벌·비정규직·외국인/이민자·연령 등 6대 차별시정으로 정책 내용이 확대 되었다(민무숙, 2004).

제정의 준비 과정이 시민사회 내에서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면 의아해 보인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과 같이 현재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진영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보여줬던 소극적 찬성의 입장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소극적 반응의 기저에는 차별을 규제하는 법의 제정이 삶의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회의감이 있다.

“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구호들은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중략) 차별보다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성 소수자들한테는 가장 크죠. 차별이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어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 친구랑 길거리에서 손을 잘 못 잡고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가깝지. 물론, 직장에서의 고용상의 차별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전에 직장에서 안 드러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미 차별을 감수하는 거죠). 결국 차별금지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하죠.”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B, 사례 13>

‘차별’이라는 말을 ‘전략적’으로 쓴다고 설명하는 <사례 13>의 언설 속에서, 법·제도의 망 속에 걸리는 ‘차별’의 내용과 실제 삶의 경험들의 결은 매우 상이하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불편함’, ‘어려움’이라는 언어 속에서 더 적절하게 설명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의 효과는 공적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성소수자 진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예시 조항이 삭제되는 상황은 차별금지법(안)을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 자리잡게 하였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된 이후 ‘성적 지향’을 두고 차별금지법의 차별사유를 문제 삼는 보수 기독교의

거센 저항 속에서,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¹⁰⁾ 그에 따라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차별예시조항의 ‘성적 지향’ 삭제는 성소수자를 정치적 주체로 가시화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다.

“가면을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록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직접 대놓고 그걸(플래카드)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서있을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 중에는 활동가가 아닌 사람이 절반이 넘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특별했다고 생각해.”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단체, 사례 10>

<사례 10>이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소수자들이 정치적 공간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정도로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거센 저항을 가져왔다. 당시 명칭 그대로 긴급하게 조직되었던 ‘긴급행동’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다양한 방식의 실천들을 통해 차별 사유가 위계화 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였다. 이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그 자체로 차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20개의 차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이처럼 열거의 방식으로 제시된 차별 예시 조항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 영역들이 ‘선별’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주요한 차별 문제로 선정된 차별 영역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할 사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그 안에서도 사회적 합의의 폭에 따라 우선성이 결정되고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분류되어 있는 차별유형들 안에서 특정 차별 영역들은 ‘기타’ 차별로 분류되며, 곧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지만 아직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류’되는 것이다(권김현영, 2007).

별적이라는 모순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점차 확장되어 갔으며,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 전반을 문제 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5>는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대응이 더 이상 삭제된 ‘성적지향만을 복원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들어가더라도, 학력이나 가족형태나 이런 차별을 받는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성소수자만 들어가면 그만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중략) 그런 거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걸 여성운동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여성운동 단체C, 사례 5>

<사례 5>는 ‘성적지향이 들어가더라도 학력이나 가족형태’로 차별 받을 수 있는 성소수자를 언급하며 차별의 복합성을 설명한다. 차별이 더 이상 특정한 정체성에 근거하여 구분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례 5>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운동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7개의 차별 영역들이 차별에서 조항에서 삭제될 때, 성별은 여전히 차별 예시 조항에 잔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이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 영역과 분리되어 사고될 때, 이를 문제화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정치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된다.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은 이 질문은 여성 정체성의 정치를 구사한 그간의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여성운동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차별의 의미,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급진적 질문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 진영은 기존의 개별화된 운동의 이슈와 방법들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반차별공동행동과 무지개행동이라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기반이 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차별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화의 층위에서 다루어져 왔던 차별금지법(안)이 점차 시

민사회의 정치적 공간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신기루, 2008).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안) 입법 과정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안에서 새롭게 모색되는 연대 활동은 그간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운동 단체들이 전제해왔던 정체성의 정치를 질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별의 의미 역시 새롭게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모호한 연대의 정치적 역설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운동하고 있는 많은 소수자 운동 진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나자,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의 연대 활동의 의미와 목표를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생겨났다. 법 대응이라는 공동의 이슈가 사라졌을 때, 연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여기(반차별공동행동)는 차별금지법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 외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각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단체에서 다 바쁘고. 그러니깐 반차공(반차별공동행동)의 이름으로 힘을 딱 실어준다거나, 사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략) 사실 많은 이슈들이 굳이 반차공의 이름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그냥 결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깐.” <여성운동 단체C, 사례 7>

이미 각 단체들이 각자의 운동의 이슈와 기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 대응이라는 연대의 기억만으로 앞으로의 연대가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례 7>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관련 사안이 아닐 때 반차별공동행동의 차원에서 이

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는 ‘모호한’ 문제가 된다. 반차별공동행동이 모든 차별 사안에 그 역량을 집중해서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각각의 현안들이 ‘굳이 반차공의 이름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그냥 결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가 무산되는 국면에서 연대의 의미와 목표를 새로 모색하게 되었던 과정은 무지개행동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가시화되었던 차별금지법 이슈가 가라앉은 시점에서, 긴급행동이 상시적 연대인 무지개행동으로 전환할 때 그것은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연대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약간, 저거 잘 될까? 무지개행동은 잘 될까? 그냥 성소수자 활동을 한다는 이유들로 모여서 그것들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선배 활동가들)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가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큰 계기들이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모이는 데 큰 동력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회의적인 거지.”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A, 사례 12>

차별금지법과 같은 ‘큰 계기’들이 없을 때, ‘계속해서 모이는 데 큰 동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무지개행동의 전망을 어둡게 보이게 했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활동을 한다는 이유들로 모여’ 있다는 공동의 기반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쉽게 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특히, 과거의 성소수자 연대가 게이와 레즈비언 정체성이 부딪치면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무지개행동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의 이슈나 동질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묶이지 않은 연대라는 점은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호한 연대는 다양한 운동 단체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이 된다. 그 안에서 ‘공동’의 투쟁

경험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는 여러 운동 단체들의 노력은 차별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반차별공동행동에 모인 단체들이 현재 차별에 대해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사례 1>의 지적은 연대의 한계라기보다 오히려 연대의 생산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지금은 어떠한 내용을 가져다 놔도,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장애 쪽에서 보면 합의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장애인운동 단체랑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직장과 가정의 양립 부분을 할 때 우리(여성운동진영)는 이것이 정규직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건데.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까지 활용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장애 여성에게는 얼마나 활용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서 아무리 이상적인 법을 가져다 놓더라도, 성소수자들이 이것이 왜 남녀로만 구성되나, 이렇게 문제제기하면 또 여기서는 합의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별을, 어떻게 말을 할래?’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 <여성운동 단체A, 사례 1>

<사례 1>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내용이 같이 반차별공동행동에 연대하고 있는 장애 인권운동 단체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아무리 이상적인 법을 가져다 놓더라도’, ‘여기서는 합의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례 1>의 푸념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제기해온 여성 정체성, 성차별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그간 차별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설명되는 것이 당연한 전제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질문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차별을, 어떻게 말을 할래?’라는 논의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대활동 속에서는 앞서 <사례 1>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제기되기 어렵다. 여러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인권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 11>은 차별 피해 당사자의 상담으로 촉발된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두고 ‘프로젝트화’ 된다고 설명한다.

“예전에는 ‘장애인들 안에도 TG(트랜스젠더)가 있을꺼야’라든지, 혹은 반대로 ‘TG(트랜스젠더)들 안에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꺼야’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럴 땐, 어떤 식으로 연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프로젝트화 되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해져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TG(트랜스젠더) A라는 사람이 상담을 해 왔을 때, 이 상담을 어디서 딜링할(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상담 자체를 TG(트랜스젠더) 단체와 장애 단체 두 사람의 상담 담당자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에 대한 이슈가 따로 있는 거고, TG(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가 따로 있는 거고.”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단체, 사례 11>

상담 활동을 하는 운동 단체들은 상담 의뢰의 내용이 단체가 포괄하는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러한 상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상담을 의뢰 받은 단체는 다른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상담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사례 11>은 연대가 ‘프로젝트화’ 된다고 지적하면서, 특정한 사례의 ‘해결’을 위해 꾸려진 연대 안에서 각각의 단체 활동가들은 자기 단위의 ‘전문 영역’에서 실무를 나눠 맡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차별 피해는 ‘장애’ 운동과 ‘트랜스젠더’ 운동 단체의 정치적 사이의 경계에서 파편화되어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고수될 때, 연대 활동은 새로운 운동을 생산적으로 기획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인 연합이 되기 쉽다. ‘각자의 이슈들을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가 될 때, 연대 활동은 기계적으로 확장될 뿐이다. 이 경우 더욱 주변화된 운동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연대는 지속적인 소외의 경험으로 남는다.

“우리 단체의 특성상(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라는 의미에서) 크게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와 연대를 하는데.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 진영과의 연대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데. (중략) 뭔가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조성 안되고, 우리의 이슈가 그 안에 핵심 이슈에서 뭔가 떨어진 이슈처럼 느껴지니까요.” <장애인운동 단체, 사례 8>

‘여성’과 ‘장애’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인 <사례 8>은 여성단체와의 연대에서도, 장애인단체와의 연대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이슈가 그 안에 핵심 이슈에서 뭔가 떨어진 이슈처럼 느껴’진다는 설명은 연대 활동이 정체성 정치의 연장선에 놓이게 될 때, 운동의 이슈가 위계화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무조건 읍소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사례 10>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반차별공동행동을 하면서) 좋았던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장애인운동을 만날 때, 무조건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 내 발이 밟혔어. 그러면 그 분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웃음) 근데 그러면 내가 사과를 못 받겠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사례 10>

<사례 10>의 설명 속에서 구체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장애인은 ‘불쌍하고, 그러니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비장애인은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고정된 정체성들 간의 범주들 속에서 설명될 때, 맥락화되지 않은 ‘불행’은 위계화되어 버리고, 그 안에서 비장애인 활동가의 역할은 ‘무조건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를 가진 활동가에게 농담처럼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 10>의 이야기는 모호하고 그래서 불안해 보였던 반차별공동행동의 정치적 역설을 보여준다. 모호하기만 했던 연대 활동이 다

양한 운동의 이슈가 환류되는 공간이 됨으로써, 그간 정체성의 정치 안에서 다루어져 왔던 차별의 의미가 변화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이 운동의 이슈와 단체의 정치학을 재구성하는 활동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 차별 이슈의 확장과 정치학의 재구성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과 같이 다양한 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상시적 연대를 모색한다고 할 때, 그 연대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은 다른 운동 영역과의 만남이 자기 운동의 자극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관계의 친밀성은 상호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통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대를 구성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개인적으로 친구가 생기는 것이 연대하는 것과 너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례 6>의 언설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무지개행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구가 생기는 것이 연대하는 것과 너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연대라기보다는... 왜냐면 연대라는 말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례들이 있으니깐. 이랜드라던지, KTX 이런 게 연대, 공대위라는 말로 쓰이는데, 무지개행동이 똑같이 연대라는 말로 쓰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성운동 단체C, 사례 6>

<사례 6>은 무지개행동에 연대라는 이름 붙이기를 주저하면서, 관계 친밀성을 만들었던 무지개행동을 기존의 연대 경험과 차별화한다. 그러나 관계의 친밀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운동들이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친구를 만나는 커뮤니티이면서 여전히 ‘연대’ 활동이 된다. <사례 9>는 친밀함에 기반한 연대가 어떻게 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나면서 다른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애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너무 컸고. 그런 게 인간관계와 결합되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고. 특히 내가 연대활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관계거든요. (중략)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많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은 관계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 많고. 그런 점에서 연대를 할 때도 공식적으로만 만나는 그런 관계는 한계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적고. 오히려 많이 생기고.” <인권운동 단체, 사례 9>

<사례 9>는 연대활동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운동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훨씬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은 관계의 친밀성이 연대의 정치적인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는 권력 감수성, 즉 ‘권력의 부당성 여부와 그 권력자가 장악한 나와 다른 인간에게 작동하는 권력의 형태를 투시하면서 그런 권력이 탈 권력화 되었을 때 변하게 될 나와 남의 관계를 즐거이 상상하게 만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홍윤기, 2002). 권력의 맥락적 작동을 ‘투시’할 수 있는 ‘눈’은 삶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가까이 느끼는 ‘감각’에 가까우며, 그런 점에서 친밀성에 기반한 연대는 ‘감수성’의 영역을 자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 감수성은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된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주장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례 4>는 차별 감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다른 연대 같은 경우,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건데.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면서 구성해 나가야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활동가가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구성하고, 같이 사람들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운동 단체C, 사례 4>

반차별공동행동이나 무지개행동에 연대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적 친밀성은 다양한 차별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며,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 활동가들은 자기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변화를 만들게 된다. 즉, 일상이 정치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의식들은 정체성의 정치로 설명되지 않았던 차별 경험들을 맥락화하고 언어화하기 위한 기획들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기획했던 반차별영화제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반차별 영화제 할 때는 화장실 문제가 완전히 대박이었죠. (웃음) 담당 활동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 접근권에, 트랜스젠더 인권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아예 화장실에다가 성별 표시를 없애고 먼저 들어가는 순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남녀 공용인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꺼려지는데. 거기서 성추행,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중략) 근데 내가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들었을 때는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여성운동 단체B, 사례 2>

<사례 2>가 설명하는 화장실 사용의 문제는 장애 접근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여성의 권리,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젠더 이분법의 관행으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의 장이 된다. 이때 여성단체 활동가인 <사례 2>는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한 화장실의 위치 고려 문제는 별다른 고민거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사례 2>는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때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뭔가 애매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 <사례 2>가 느끼는 곤란한 감정은 트랜스젠더의 차별 피해를 고려하게 되면서, 그간 여성운동이 정치화했던 ‘여성’ 정체성이 다른 차별의 문제를 묵인하거나 혹은

지속시키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곤경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은 다양한 차별의 구성 맥락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정치학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차별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정체성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지점은 <사례 3>의 설명 속에서 '우리가 옳고,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정치적 올바름'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차별금지법을 거치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성주의에 대한 애착이랄까? 짐작?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옳고,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날선 무언가가 있었다면. 차별금지법을 지나고 나서는 그 차별 스펙트럼이 정말 성별을 떠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그런 식으로 넓어지고 있죠.” <여성운동 단체B, 사례 3>

'차별 스펙트럼이 정말 성별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례 3>의 말은 차별금지법을 거치면서 그간 여성 운동이 설명했던 차별의 의미에서 여성 정체성이 함의하는 바가 유연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별을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살피게 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학은 <사례 3>의 말처럼, '그런 식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 운동 단체의 정치학이 확장되는 과정은 단선적인 확대 재생산의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학의 경계를 확인하고, 협상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아래의 <사례 8>의 이야기는 다양한 운동의 이슈들이 개별 단체의 정치학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학의 경계가 재구성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른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들을 실제로 기획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가 게이 장애 남성의 상담전화를 받고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단체(장애운동 단체)에 가서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때 “야 우리는 장애 여성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됐다, 게이 이슈.”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이런 거.

(단체에서 그렇게 반응한 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반차별 연대의 의미를 저평가한다는 면에서)

막 안타깝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른 거였다면 또 달랐겠죠. 여성단체 A랑 같이 이야기 했던 형벌중심주의를 가지고 단체에서 공유할 때는, 이런 거는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착용하게 하는 거는... (잠깐 이야기를 멈췄다가) 이게 조직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랑 밀접한 거니깐. 우리 단체 내 성폭력상담소에서 형벌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 거고. 너무나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운동 단체, 사례 8>

<사례 8>은 반차별공동행동의 논의 안건 중 하나였던 게이 장애 남성의 상담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단체에 돌아가 이야기할 때,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차별공동행동의 또 다른 논의 안건 중 하나였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착용건에 대해서는 ‘우리랑 밀접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단체 내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될 때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사례 8>의 말하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표현과 ‘우리랑 밀접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운동의 이슈들은 개별 단체의 정치학 내에서 가깝고 먼 ‘거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의 측정은 각 단체의 운동의 이슈와 근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직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라는 말꼬리를 달게 한다. 그러나 확장된 연대를 통해 정치학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종속에 대한 저항

에 동참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의 지평이 넓어지는 과정은 동시에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협상'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활동가들의 열의를 온전히 받아 안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세적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공동체를 정치학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전환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즉 자기 완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운동 단체들이 자신의 운동 영역을 특정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다른 사회적 집단과 분리시키고 특정한 이해의 문제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 문제와 자신의 운동 영역을 연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현안 이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연대를 실험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시민권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재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7. 결론

지구화의 영향 속에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양성, 차이에 대한 높은 담론적·정책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을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현재 그다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간 많은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의 영역 안으로 흡수·통합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던 비판적 급진성을 탈각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배동인 1992; 한국사회포럼, 2006). 제도화된 정치 공간 안에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요청하는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의 실천들이 일정 부분 정체성의 정치학에 의지하게 되고, 이는 시민사회 운동을 권리를 향한 이해 집단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과 시민권을 둘러싼 급진적 논쟁들을 다시 시작하고, 그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운동 단체들 연대 활동은 차별을 다양한 권력 망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특정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별의 의미들을 드러내고, 개별 운동 단체들의 정치적 지평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특정한 정체성에 기반한 특수화된 이익(specific interests)과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학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권력 관계들 속에서 등장하는 타자들과 함께 평등이라는 정치적 지향을 공유하는 실천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자 하였다. 즉, 자기 완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학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운동 단체들과 접점을 만들어가는 연대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은 차별을 해석하고 문제화하는 데 풍부한 언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축적된 노력들은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의 수정과 확장에 기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김현영. 2007.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반차별공동행동. pp. 15-25.
- 김선옥. 2005. “지구화 시대의 공공정책의 변화와 여성정책.” 『지구화 시대 여성과 공공 정책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편). 푸른사상. pp. 17-42.

- 김엘림. 2005. “여성과 법.” 『새여성학 강의』.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동녘. pp. 245-276.
- 김영옥. 2007. “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8(2): 129-159.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10-37.
- 민무숙. 2004.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선영. 2004. 『성평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박은정. 2005. “지구화와 여성주의 법이론.” 『(지구화 시대) 여성주의 대안가치』. 한국여성연구원(편). 푸른사상. pp. 57-110.
- 배동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서동진. 2008. “소송하는 사회, 불평하는 주체.” 『광장의 문화에서 현실의 정치로』.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엮음. 산책자. pp. 131-150.
- 송석윤. 2004.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박영사. pp. 3-24.
- 신기루. 2008. “당신은 존재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응하는가.” 『지금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엮음. 사람생각. pp. 55-57.
- 신옥주. 2009.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안주엽. 2007. 『노동과 차별』. 한국노동연구원.
-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원영희. 2006.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유동철. 2007.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 윤수중. 2005. “우리 시대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pp. 11-32.
- 이숙진. 2009.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경제와 사회』

84: 230-255.

이준일. 2008.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159-182.

장서연. 2007. “실효성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반차별공동행동. pp. 35-49.

정가영. 2009.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회연구』 18: 9-44.

정강자. 2008.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소고.” 『제 11차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 IV』.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pp. 99-130.

_____. 2010.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조순경. 2002. “차별의 이해.”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편). 국가인권위원회. pp. 15-54.

조형. 1996. “법적 양성 평등과 성의 정치.” 『양성 평등과 한국 법체제』. 조형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261-296.

한국사회포럼. 2006. 『논쟁이 돌아온다』 자료집. 한국사회포럼.

홍윤기. 2002. “반입장의 입장: 우리시대의 권력비판과 권력감수성.” 『인물과사상』 30: 90-125.

홍태영.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정치사상연구』 15(1): 80-100.

아파두라이(A. Appadurai). 1996. *Modernity at Lart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차원현 · 채호석 · 배개화 옮김.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브라운(W. Brown). 2006. *Regulating Aver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승철 옮김. 2010. 『관용』. 갈무리.

- 마르티니엘로(M. Martiniello). 1997. *Sortir Des Chettos Culturels*. 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Paris. 윤진 옮김.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 터너(B. S. Turner).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Unwin Hyman. 서용석·박철현 옮김.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일신사.
- Bronner, S. E. 1999. *Ideas in Action: Political Tradi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L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astle, S. & A. Davidson.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pp. 139-167.
- Marshall, T. H. 197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Press.
- Mouffe, C. 1992.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cy politics." Judith Butler & Joan Scott (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pp. 369-384.
- Scott, J. W. 1995.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8-52.
- Tilly, C. 1996.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2005. "Why worry about Citizenship?" *Identities, Boundaries, and Social Ties*. Boulder(CO): Paradigm Publishers. pp. 187-198.
- Yuval-Davis, N. 2006. "Intersectionality and Feminism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3(3): 193-209.

최수연은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주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평택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이후 뉴스쿨대학교(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정치학과 박사과정 입학예정이다.

[2010. 12. 31. 접수; 2011. 5. 5. 수정; 2011. 5. 25. 채택]